수수료 지급지침

- 제정 2009. 8.17.
- 개정 2009. 12. 31.
- 개정 2010. 11. 1.
- 개정 2012. 4. 23.
- 개정 2013. 5. 20.
- 개정 2013. 9. 1.
- 개정 2013, 10, 28,
- 개정 2014. 7. 17.
- 개정 2015. 6. 3.
- 개정 2016. 10. 31.
- 개정 2016. 11. 25.
- 개정 2017. 6. 22.
- 711 0 2017. 0. 22.
- 개정 2019. 7. 18. 개정 2019. 9. 10.
- 개정 2019. 10. 29.
- 개정 2020. 8.28.
- 개정 2022. 5. 26.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
 -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법령에 근거하거나, 진흥원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각종 수수료 지급은
 - 이 지침 또는 예산집행지침 등에 지급근거를 명시한다.<개정 2019. 10. 29.>
- 제3조(수수료의 구분) 수수료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개정 2012. 4. 23., 2022. 5. 26.>
 - 1. "행사비"는 심포지움·토론회·좌담회 등 진홍원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발표 자·사회자 및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 - 2. "강사료"는 강연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- 3. "자문비"는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모임의 구성원에게 지급하거나,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 <개정 2012. 4. 23.>
- 4. "교통비"는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문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<개정 2012. 4. 23., 2022. 5. 26.>
- 5. "원고료"는 진홍원에서 발간하거나 발간을 대행하는 간행물에 원고를 기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6. "번역비"는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적 및 자료 등을 번역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7. "감수료"는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간행물, 서적 및 자료 등을 감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지급기준) ①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[별표 제1호]에 의한다.<개정 2022. 5. 26.>

- ② 1개의 행사에서 2개 이상의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1개 임무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지급한다.<개정 2022. 5. 26.>
- ③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특강·세미나 등의 강사에 한하여 적용된다. 다만, 전문강사에 의하여 장시간 연속되는 교육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의 강사료는 별도 품의에 의하여 지급한다.<개정 2022. 5. 26.>
- ④ 용역제공자가 희소성한 경우, 용역이 야간·조조, 휴일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, 용역제공자가 5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22., 2022. 5. 26.>
- ⑤ 용역제공자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강연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12. 4. 23., 2015. 6. 3., 2022. 5. 26.>
- 1. 진흥원 이외의 인원이 1/2 이상을 차지하고, 강의준비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: 제1항[별표 제1호]<신설 2022. 5. 26.>
- 2. 진흥원 이외의 인원이 1/2 이하이거나 내부교육일 경우: 제1항[별표 제1호] 내부강사료 (한국어강의)의 1/2(일일 최대 5만원 이내)<신설 2022. 5. 26.>
- ⑥ 법률·세무·회계 등 전문지식의 자문과 원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품의에 의하여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.
- ⑦자문료 지급시 직원 및 공무원의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한다.<개정 2016. 10. 31><개정 2017. 6.

22><개정 2019. 10. 29>

- ⑧ 팩스(FAX),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⑨ 1개의 용역에 대하여 강사료와 자문비를 중복하여 함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2. 5. 26.>
- ① 원고료는 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기고한 경우 또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원고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제1항[별표 제1호]에 의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2. 4. 23., 2019. 10. 29., 2022. 5. 26.>
- ① 국외전문가의 초청경비는 별도의 항공, 교통,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외에는 [별표 제2호]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기준을 초과하여 항공료 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2. 5. 26.>
- ②원격지 회의 등으로 인하여 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과 별도로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장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단,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.<신설 2017. 6. 22>
- ③ [별표 제1호]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. 단 별도의 법률에서 상한액을 규정하는 경우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.<개정 2016. 10. 31., 2017. 6. 22.>
- 제5조(지급방법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외에서의 행사 개최 및 국외전문가의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<2009. 8. 17.>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9. 12. 31.>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 11. 1.>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 4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5. 20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10. 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7. 17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 6. 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10. 31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11. 25.>

이 지침은 11. 01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6. 22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9. 10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10. 29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8. 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5. 26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<개정 2009. 12. 31, 2012. 4. 23, 2013. 5. 20, 2013. 10. 28, 2014. 7. 17, 2015. 6. 3, 2016. 10. 31, 2016. 11. 25., 2017. 6. 22, 2019. 7. 18, 2019. 9. 10, 2019. 10. 29, 2020. 8. 28. 2022. 5. 26.>

수수료 지급기준표

1. 대상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」(이하, '청탁금지법')에 맞추어 수당 지급대상을 구분

| 대상 | | 신분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| 공무원 | 각종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※ 각급 학교 교직원은 제외 | |
|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| 공공기관 | 조 그립 그표 표그런는 제되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임직원(공직유관단체 포함) | |
| <u> </u> | 각급 학교, 언론 | 각급 학교, 언론사 임직원 | |
| 민간 | | 법령적용 대상이 아닌 자 | |

2.외부인사 구분 :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수당의 지급대상인 외부인사의 등급을 분류

| 디미 | 신분 | 외부인사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1등급 | 공무원, 공공기관 | - 장관급 이상 | |
|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- 대학총장* * 대학총장 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, 사립 대학교 총장 | |
| | 공무원, 공공기관 | - 차관급 - 공공기관 기관장 | |
| 2등급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- 대학총장** ** 대학총장 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- 기업체 이사급 이상 | |
| 3등급 | 공무원, 공공기관 | - 4급 이상 공무원 - 공공기관 임원 | |
|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- 부교수 이상 - 기업체 임원급 이상 | |
| 4등급 | 공무원, 공공기관 | - 5급 이하 공무원 - 공공기관 임원 외 직원 | |
|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- 조교수 이하 - 기업체 임원 외 직원 | |

3. 지급액

1) 행사비 지급기준

(단위 : 천원)

| | 신분 | 외부인사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0 п | | 발표자 | 사회자 | 토론자 |
| 1등급 | 공무원, 공공기관 | 400/시간 (최대 600) | 400/시간 (최대 600) | 400/시간 (최대 600) |
|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500/시간 (최대 750) | 400/시간 (최대 600) | 400/시간 (최대 600) |
| 2등급 | 공무원, 공공기관 | 400/시간 (최대 600) | 300/시간 (최대 450) | 300/시간 (최대 450) |
|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400/시간 (최대 600) | 300/시간 (최대 450) | 300/시간 (최대 450) |
| 3등급 | 공무원, 공공기관 | 300/시간 (최대 450) | 200/시간 (최대 300) | 200/시간 (최대 300) |
|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300/시간 (최대 450) | 200/시간 (최대 450) | 200/시간 (최대 450) |
| 4등급 | 공무원, 공공기관 | 200/시간 (최대 300) | 100/시간 (최대 300) | 100/시간 (최대 300) |
| | 각급 학교, 언론, 민간 | 200/시간 (최대 300) | 100/시간 (최대 300) | 100/시간 (최대 300) |

2) 강사료 지급기준

(단위 : 천원)

| 등급 | 신분 | 외부인사 | 내부직원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|--|
| | 공무원, | 400/시간 | | | |
| 1등급 | 공공기관 | (최대 600) | | | |
| 10 🖽 | 각급 학교, | 500/시간 | | | |
| | 언론, 민간 | (최대 750) | | | |
| | 공무원, | 350/시간 | | | |
| 2등급 | 공공기관 | (최대 500) | 한국어강의 | 40 /시간 | |
| 25 🗉 | 각급 학교, | 400/시간 | 외국어강의 | 80 /시간 | |
| | 언론, 민간 | (최대 600) | 내부강의* | 20 /시간 | |
| | 공무원, | 300/시간 | | | |
| 3등급 | 공공기관 | (최대 450) | * 내부강의 : 진흥원 외 인원 1/2 이하 또는 내부직원대상 강의를 말하며, 최대 50천원 지급가능 | | |
| ა ი ⊔ | 각급 학교, | 300/시간 | | | |
| | 언론, 민간 | (최대 450) | 2001, 44 0022 71370 | | |
| 4등급 | 공무원, | 200/시간 | | | |
| | 공공기관 | (최대 300) | | | |
| | 각급 학교, | 200/시간 | | | |
| | 언론, 민간 | (최대 300) | | | |

3) 그 밖의 지급기준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대 상 | 지급 상한액 | 비고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|
| 자문비 | 법령에 의한 위원회 참석 위원 | o 150/1일 ※ 서면심사 100/1일 o 참석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지급: 50/1일 1회 | ●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●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| |
| | 전문가 자문 | o 200/1시간(1일 최대 400) o 온라인 평가 : 100/1시간 (1일 최대 300) | ●업무관련 각종 회의 (자문회의, 평가회의, 포럼, 간담회, 워크숍 등)에서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는 경우 | |
| | 기타 전문가 | 실소요비용 | ●법률, 세무, 회계 등에 관한 자문 | |
| 원고료 | 외부인사 | (국문) 10/장, (영문) 15/장 | ●원고료 지급기준 : 200지 원고지 기준 1장 또는 presentation용 1장 기준 ※ A4용지 1장은 원고지 4장으로 계산함 | |
| | 내부직원 | (국문) 5/장, (영문) 7/장 | | |
| 번역료 | 외부인사, 번역업체 | 매년 단가계약업체에서 제공하는 단가표에 준함 | _ | |
| 감수료 | 외부인사 | 실소요 비용 | _ | |
| 이사회 참석 수당 | 이사회 등 참석 임원 | o 선임 비상임이사 600/1회 o 비상임 이사/감사 : 500/1회 | ●임원추천위원회, 소위원회 등 이사회 활동의 일환 으로 참석하는 회의 | |
| 조정안 작성 수당 | 전자문서·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/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/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| 300/건 | _ | |

[별표 제2호]

국외전문가 항공료 및 여비지급 기준

| 구분 | 항공료 | 교통비/식비 | 숙박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등급 | | | 특급 호텔 준특실 이하 |
| 2등급 | 국외여비기준 준용 | 국내여비기준 준용 | 특급 호텔 보통실 이하 |
| 3등급, 4등급 | | | 1급 호텔 이하 |